

민법 일부개정 법률안 (손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181
--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6. 9. 6.

발의자 : 손금주 · 이동섭 · 김광수

정인화 · 최경환(국) · 김관영

김삼화 · 채이배 · 송기석

윤영일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937조제8호에서는 “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”을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피후견인의 배우자가 피후견인을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 등을 하였거나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후견인이 될 수 없게 되어 사안에 따라 구체적 타당성에 맞지 아니하는 측면이 있음. 따라서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그 직계혈족이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더라도 후견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937조제9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민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37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8. 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
9. 제8호에 정한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. 다만,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37조(후견인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후견인이 되지 못한다.</p> <p>1. ~ 7. (생 략)</p> <p>8. <u>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배우자와 직계혈족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	<p>제937조(후견인의 결격사유)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 <p>8. <u>피후견인을 상대로 소송을 하였거나 하고 있는 자</u></p> <p>9. <u>제8호에 정한 자의 배우자와 직계혈족. 다만, 피후견인의 직계비속은 제외한다.</u></p>